

공무원 근로자 채용 공고

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-714호

보건복지부에서 공무원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,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6년 9월 10일

보건복지부장관

1. 채용 개요

□ 채용분야

채용 분야	채용예정 인원	근무지	담당업무
공무원	1명	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(세종)*	○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○ 기타 아동보호자립과 소관업무로서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

* 최초 근무장소는 세종 보건지부 별관(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)이며, 회사 운영상황에 따라 근무지는 변동될 수 있음

♠ 담당업무 및 근무지는 최초 상기의 조건으로 선발하되, 채용기관 인력운영상 필요한 경우 담당업무 및 근무지는 변경될 수 있음

2. 근무 조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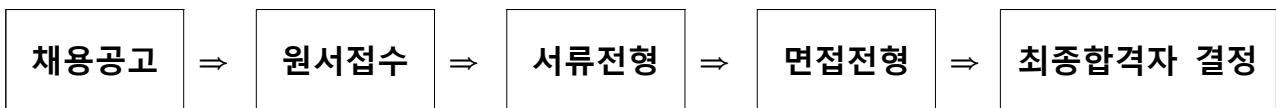
- 신분 : 공무원 (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)
- 근무기관 : 보건복지부 (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)
- 근무(계약)기간 : 계약 체결 시 ~ 정년

※ 계약체결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연번	구분	내용
1	근무형태	○ 전일제 근무 ○ 근무요일 : 월 ~ 금요일
2	근무시간	○ 적용기준 : 1일 8시간, 1주 40시간 ○ 근무시간 : 09:00부터 18:00까지 ○ 휴게시간 : 12:00부터 13:00까지(점심시간)
3	임금수준	○ 기본급 : 월 210만원 상당 (세전기준, 4대보험 본인부담액 포함) ○ 정액급식비, 명절휴가비 등은 계약에 따라 별도 지급 ○ 연장·야간 및 휴일근무는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요건 충족 시 별도 지급 ○ 4대보험 가입(개인별 가입연령에 따라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음)

- ♠ 근로조건 및 보수액은 채용계약 시 최종 확정함
- ♠ 근로장소,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, 근무요일은 회사 운영여건 및 환경에 따라 부득이하게 조정될 수 있음
- ♠ 임금수준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됨에 따라, 예산운영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♠ 기타 복지후생 등의 사항은 「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」 등 관련 규정에 따름

3. 전형단계 및 일정



구분	일정	비고
i) 채용공고	'26. 9월 초 ~ 9월 중순	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 게시
ii) 응시원서접수	공고기간과 같음	응시원서 접수방법 참고
iii) 서류합격자 발표	'26. 9월 말	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
iv) 면접시험	'26. 10월 초	장소 및 시간 합격자 별도 통보
v) 최종합격예정자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	'26. 10월 초	
vi) 최종합격자 발표	'26. 10월 초	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
vii) 신원조회 및 자격사실검증 등	'26. 10월 초	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취소
viii) 최종 임용 예정일	'26. 10월 초~중순	보건복지부 채용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

4.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

□ 응시원서 접수 방법

- (원서접수 기간) 2026. 9. 10. ~ 9. 17.
- (접수처)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
- (접수 방법) 접수처에 ❶우편(등기) 접수 또는 ❷이메일 접수

❶ 주소 : 우) 30113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 아동보호자립과

※ 우편접수시 겹봉에 「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공무직 지원」 반드시 명기

❷ 우편 · 이메일접수는 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

※ 이메일의 경우, enkistar@korea.kr로 송부

□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
공무직 근로자	○ 응시원서 (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별지 제4호서식) ○ 입사지원서 (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별지 제5호서식) ○ 자기소개서 (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별지 제6호서식) ○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 (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별지 제14~16호서식)

5. 가점사항 및 결격사항 (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근로자 등 공채채용 기준 제23조, 제26조)

□ 가점 사항 (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한 서류 기준)

○ 아래 가점 사항이 있을 경우 입사지원서(붙임2)에 체크하여 제출

항목	내 용	부가 점수
법정 가점	「국가유공자법」 제29조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「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	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~10% * 가장 유리한 1개의 내 용에 대해서만 적용함
사회 형평 가점	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	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% * 최대 1개의 내용에 대 해서만 가점 적용함

※ 가점 사항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인정

※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. 단, 예외적으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함. 법정가점과 사회형평가점은 합산할 수 있고, 가점의 총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%를 초과할 수 없음 (법정가점에서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).

※ 다만, 서류전형 적부요건에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면접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된 경우 최종 합격예정자가 채용 예정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채용자가 없을 수 있음

□ 결격 사유 없을 것

-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
-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
- 공정채용기준 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(공정채용기준 제26조)

< 공정채용기준 상 채용결격사유 >

①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- * 예시 :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)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3(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)

6. 채용방법

□ 서류전형

-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직무수행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
- 단,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*에 따라 5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

* 서류전형기준(100점) : 지원분야 경력(30점), 지원분야 자격증(10점), 지원분야 적합성(60점)

-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법정가점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고, 법정가점을 적용하였음에도 동점자가 있을 경우 서류전형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
- 서류전형 합격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hw.go.kr>)에 공고, 면접 일시.장소는 개별 연락 예정

□ 면접전형

-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
-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가적 능력,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 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항목을 상(10점), 중(6점), 하(2점)로 평가등급을 나누어 종합적으로 평가
-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법정가점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고, 법정가점을 적용하였음에도 동점자가 있을 경우 사회형평가점을 받은 자, 서류전형 고득점자순으로 결정
- 불합격기준*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감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

* 불합격 기준 :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"하"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"하"로 평정했을 때

□ 최종합격자 발표

-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hw.go.kr>) 공고 및 개별 통보
-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 내(소수점 이하는 1명)에서 예비합격자 선정
 -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(단,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)

7. 유의사항

-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, 근무지역 등이 본인과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서류접수 결과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 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.
-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내 채용서류 반환청구 시 이를 반환하고, 위 기간 내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파기합니다. 다만, 채용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성명 및 연락처(전화, 전자우편주소 등)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보관할 수 있으며, 채용관련 문서는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존됩니다.
- 제출된 서류의 기재 착오,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경우,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,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, 기타 부정합격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.
- 서류 및 면접시험 결과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 수와 같거나 적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, 합격 취소, 중도 퇴사, 채용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.

- 최종 채용을 위해 '자격요건' 확인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, 합격예정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.

붙임 1. 응시원서 1부 [별지 제4호서식]

2. 입사지원서 1부 [별지 제5호서식]

3. 자기소개서 1부 [별지 제6호서식]

4.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1부 [별지 제14~16호, 제20호서식] 끝.